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6-1805호

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

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(2016. 12. 23.)된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2월 29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대상구역: 신길6재정비촉진구역

나. 대상위치: 영등포구 신길동 510 일대

다. 직권해제 관련근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4항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4조의3

라. 공고기간: 2016. 12. 30. ~ 2017. 1. 18.

마. 서면제출 지정장소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(☎ 2670-4178, fax: 2670-3593)

바. 의견제출 방법

-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‘의견 제출서’ 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(fax) 제출

사. 관련서식: 의견 제출서 1부.

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관련 의견 제출서

 성 명	
 연 락 처	
 소유자 소재지 주소	
 의견내용	

※ 의견 제출서 첨부하여 직접 영등포구(도시계획과) 방문 또는 fax(2670-3593) 송부

※ 2017. 1. 18.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